

ADM - 제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 일반조건

1. 완전한 합의

- a. 본 ‘제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 일반조건’(“**본 일반조건**”)은 제품(“**제품**”) 및/또는 서비스(“**서비스**”) 구매를 위하여, 주문서(이하에서 정의함)에 기재된 Archer Daniels Midland Group 소속 회사(“**ADM**”)와 주문서에 상호와 정보가 특정된 공급자(“**공급자**”) 간에 이루어진 구매주문서(“**주문서**”)의 일부가 된다.
- b. 주문서와 본 일반조건은 ADM 이 공급자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ADM 과 공급자 간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공급자가 구매주문서, 사양 등에서 제안한 조건은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의 조건을 수정, 취소 또는 보충하는 것을 의도하는 한 ADM 을 기속하지 않는다. 전술한 서면에 대한 포기, 수정 또는 변경은 ADM 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서명하지 않는 한 기속력이 없다. 구두 또는 서면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전 또는 동시에 발생한 합의 또는 협상에 대한 증거 또는 거래 과정, 상거래관행 또는 이행과정에 대한 증거는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과 상충되는 사항을 주장하거나,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을 설명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이 당사자들의 실제 합의를 반영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 c. ADM 이 발송한 문서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문서(ADM 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서명한 주문서에 대한 수정, 변경 및/또는 보충 포함), (2) 본 일반조건

2. 주문서 수락

- a. 주문서 또는 ADM 의 서면 지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ADM 의 주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칠(7)일 이내 주문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 b. 주문서는 다음 사항 중 먼저 발생하는 시기에 공급자가 유효하게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 i. 주문서에 대한 공급자의 (서면, 이메일 등에 의한) 수령의 확인;
 - ii. 공급자의 제품 선적 또는 공급자의 서비스 이행; 또는
 - iii. 공급자의 제품/서비스 대금 수령
- c. 주문서는 오로지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수락된다.
- d. 공급자의 주문서 수락 또는 이와 유사한 확인은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에 포함된 ADM 의 제안에 대한 공급자의 유효하고 기속력 있는 수락을 구성한다.
- e. 주문서와 본 일반조건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추가 조건 및/또는 수정 조건 및/또는 다른 조건은 ADM 을 기속하지 않으며, ADM 이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 f. ADM 은 공급자가 수락한 이후에도 주문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추가 비용 발생없이 요구 받은 변경을 따를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성실히 논의하기 위하여 ADM 의 변경 요구를 수령한 후 삼(3) 일 이내에 ADM 에게 통지한다.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추가 비용없이 이와 같이 요구 받은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급자가 요구 받은 변경을 따를 수 없다는 통지 없이 ADM 의 변경 요구를 수령한 후 수락한 주문서를 계속하여 이행하는 것은 공급자가 요구 받은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인도

- a. 공급자는 주문서에 기재된 인도 시간 및 장소, 수량, 사양, 1차 포장 및 2차 포장 요건과 기타 요건(있는 경우)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도하기로 약정한다.
- b. 공급자는 상술된 바를 위반하여 ADM 이 입은 청구, 채무, 손해, 손실 및 비용 일체를 책임지고 ADM 을 이로부터 면책한다.
- c. 공급자는 ADM 에게 서면으로 인도 조건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ADM 은 단독 재량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i. 변경에 동의한다;
 - ii. 변경을 거절한다. 이 경우 원래의 인도 요건은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하다; 또는
 - iii. 공급자에 대한 책임 없이 즉각적인 서면 통지로서, 공급자가 기 인도하고 ADM 이 수락한 제품/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주문서를 해지한다.
- d. 공급자는 ADM 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주문서에 기재된 인도 일정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하지 않으며 주문서에 특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는다. 초과된 수량의 경우 ADM 은 초과 수량을 공급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공급자에게 반환과 관련한 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청한다.
- e. 인도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이는 하자(아래 정의됨)로 간주되고 ADM 은 본 일반조건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포장 및 선적

- a. 주문서에 달리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ADM 에게 인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포장한다. ADM 이

주문서에 합의된 인코텀즈(incoterms)를 특정하여 기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따라 ADM 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수령할 때까지 제품에 대한 손실 및 손해 위험을 부담한다.

- b. 주문서에 달리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상술한 선적, 인도, 포장 및 표시(marking)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5. 수락

- a. ADM 이 공급자의 제품/서비스를 인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ADM 의 수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DM 은 공급자가 인도한 모든 제품/서비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갖는 바, 이러한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서비스를 수령한 후 삼십(30)일 이내 또는 주문서에 특정된 기타 기간으로 한다. ADM 은 제품/서비스를 수락한 후 서면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한다. 제품/서비스에 하자가 있거나 여하한 면에서 요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ADM 은 공급자에게 서면/이메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본 일반조건 제 6 조(하자)가 적용된다.
- b.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손해 또는 손실 위험과 소유권은 ADM 이 전술한 바에 따라 수락하는 경우 ADM 에게 이전된다.

6. 하자

- a. ADM 은 주문서에 따라 ADM 에게 인도된 제품/서비스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에 규정된 요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는다(“**하자**” 및 관련하여 “**하자가 있는 제품/서비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단독 재량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i. 하자가 있는 제품/서비스를 거절하고 ADM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공급처(들)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한다;
 - ii. 공급자에게 공급자 비용으로 하자를 ADM 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또는
 - iii. 인도된 제품/서비스 일체를 거절한다.
- b. 공급자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 위험과 소유권이 ADM 에게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거절, 교체 또는 시정 요구 또는 이러한 하자(이러한 하자 및 하자가 있는 제품/서비스의 사용, 판매 및/또는 유통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청구, 채무, 손해, 손실 및 비용 일체로부터 ADM 을 면책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ADM 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한다:
- i. 하자 및 하자가 있는 제품/서비스 또는 제품/서비스 일체(하자가 있는 제품/서비스와 인도 시 또는 동일한 주문서에 따라 동일한 포장으로 포장된 정상 제품/서비스 포함)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ii. 하자가 있는 서비스의 재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한 교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iii. 제품/서비스가 ADM 에게 인도되었고/되었거나 ADM 이 이를 검사하였으나 검사 시 제품/서비스가 공통의 합리적인 조치를 통하여 조사 과정에서 감지할 수 없고/없거나 공급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나 이를 ADM 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하자가 검사 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iv. ADM 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급처(들)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급자에게 주문서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 일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 v. 하자가 제품 보증 기간 동안 발생하고 공급자가 ADM 이 표시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자를 수리하거나 시정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하자를 수리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비용 일체를 지급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c. ADM 이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에 따라 하자가 있는 제품/서비스를 거절하고 공급자가 ADM 이 특정한 기간 내에 거절된 제품/서비스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 ADM 은 단독 재량으로 ADM 또는 ADM 이 승인한 제 3 자를 통하여, 공급자의 비용으로, 파기, 판매 등을 포함하여, 수거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제품/서비스를 반환하거나 자유로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7. 지급

- a. ADM 은 주문서에 따라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지급 조건이 주문서에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문서에 따라 지급할 모든 지급금은 ADM 이 해당 제품/서비스를 수락하고 공급자로부터 유효한 청구서를 수령한 후 [구십(120)일] 이내 지급한다.
- b. ADM 은 공급자가 발행한 유효한 청구서를 확인한 후에 한하여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에 기재된 지급 일정과 방식(상술됨)에 따라 제품/서비스 대금을 지급한다.
- c. ADM 은 (i) 주문서에 따라 인도되지 않은 제품/서비스의 수량 부족을 이유로 이에 비례하여 또는 (ii) 제 9 조에 따른 지연 이행된 수량을 이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액 또는 (iii) 공급자의 세금의 부과액 또는 면세액을 감액 또는 상계할 수 있다.
- d. ADM 의 지급은 대금이 지급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락을 구성하지 않는다. ADM 은 공급자가 ADM 에게 지급할 금액(주문서 또는 기타 주문 또는 계약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ADM 이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계할 수 없는 경우 ADM 은 공급자에게 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e. 공급자는 관계 법률에 따라 AMD의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자 포기가 관계 법상 가능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은 연 0%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 가장 낮은 비율의 이자로 하기로 한다.

8. 확약 및 보증

a. 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증

공급자는 이에 ADM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증한다:

- i. 제품은 사용되지 않은 신제품이다 (ADM에게 사전에 달리 명시적으로 알려지고 ADM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 ii. ADM에게 이전된 제품/서비스 소유권은 (a) 제 3자에 의한 권리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으며 (b) 제품/서비스 소유권이 ADM에 이전된 후 ADM에 대한 제품/서비스 소유권의 매매 및 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분쟁,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며 (c) 일체의 권리제한(lien) 및 담보 또는 제한이 없으며 소유권을 ADM에 매도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제 3자들과의 기타 거래 시 담보로 사용되지 않았다;
- iii. 제품/서비스는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에 특정된 요구 조건 일체를 준수한다;
- iv. 제품/서비스는 매매 가능한 품질, 만족스러운 품질이며 특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정된 목적 일체에 적합하고 하자가 없다 (숨겨진 하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 v. 제품/서비스는 작동하는 상태로 인도되고 설치된다; 그리고
- vi. 제품/서비스에 대한 허위진술을 ADM에 한 바 없다.

전술한 보증은 명시적인지 또는 묵시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모든 관련 보증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b. 법 준수에 대한 보증:

- i. 공급자는 각 ADM 회사의 설립지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서비스와 공급자의 공급이 이에 부합되도록 한다.
- ii. 공급자는 공급자가 본 일반조건 및 주문서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인가, 허가 및 승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진술 및 보증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부담하며 ADM 및 그의 이사들, 임원들, 고용인들(servants), 직원들 및 대리인들을 이로부터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c.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

- i. 공급자는 이러한 ADM 의 제품/서비스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ii. 주문서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ADM 이 ADM 의 이러한 제품/서비스 사용과 목적을 위하여 제품/서비스의 상표, 상호, 품질, 디자인 및/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 iii. 공급자는 ADM 및 허용된 그의 양수인 또는 재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제품/서비스의 소유 또는 사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도용한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채무로부터 ADM 및 허용된 그의 양수인 또는 재실시권자를 면책한다.

- iv.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문서에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이 ADM에 귀속되도록 한다.
- v.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서비스를 제 6 조(하자)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d.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과 이해상충 부재에 대한 보증:

공급자는 이에 ADM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증한다:

- i.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기로 하고 특히 공급자가 본 일반조건과 주문서와 관련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없으며 이해상충은 특히 경제적이고/이거나 정치적인 이해의 결과 발생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 ii. 이해상충으로 간주되거나 잠재적인 이해 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ADM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iii. ADM과 상거래를 개시하는 것과 관련된 인센티브 또는 보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여하한 당사자(ADM의 주주들, 이사들, 임원들 및/또는 직원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게 여하한 이득(advantage) (현금, 현금에 상당하는 것, 상품권(voucher), 선물 또는 기타 급부)를 허여한 바 없으며 이를 허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구한 바 없으며 이를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를 득하려고 시도한 바 없으며 이를 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수락한 바 없으며 이를 수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e. 공급자의 기타 보증 및 약정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i. ADM 이 공급자의 주문서 이행을 위하여 여하한의 의사교환 형식으로 제공한 모든 정보(“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공급자는 비밀정보에 접근한 수권된 그의 대표들이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에 기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공급자는 수권된 그의 대표들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오로지 알 필요가 있는 지의 여부에 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함을 보증한다;
- ii. 본 계약 첨부 부록 1 ADM 의 표준준수조항(Standard Compliance Clause)을 준수한다;
- iii. <https://www.adm-asia.com/en-us/procurement/potential-suppliers/> 게시된 ADM 의 공급자 조건(Supplier Expectations)을 준수하며 이는 ADM 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수정, 변경 및/또는 보충된다; 그리고
- iv.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직원, 대표자 또는 기타 대리인은 ADM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ADM 의 시설에 출입하지 않는다. ADM 시설에 소재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자의 직원들, 대표자들 및 기타 대리인들은 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바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규칙, 방침 및 절차 일체를 준수한다.

9. 지연 이행

- a. 관계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는 공급자가 하자를 시정하고/하거나 대체할 기간을 포함하여 주문서에 기재된 제품 인도 또는 서비스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각 지체일 당 주문서 가액의 0.05%에 상당하는 금액을 ADM 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금액은 관련 법에 따른 구제수단에 대하여 허용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문서에 기재된 제품/서비스의 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금액 수량과 함께 ADM 은 그의 재량으로 제 11 조에 따라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을 해지할 수 있다.

- b. 어떠한 경우에도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금액은 아래 제 10 조에 규정된 ADM 의 배상청구권을 해하지 않는다.

10. 배상

- a. 달리 서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을 이행하는 동안 하나 이상의 조건(본 일반조건 및 주문서에 기재됨)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하는 당사자는 상기 제 9 조에 규정된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 금액 과 별도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b. 관련 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 조에 기재된 손실 및 손해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a) 공급자, 공급자의 이사들, 임원들, 대리인들 또는 계약자들의 과실 행위, 중대한 부작위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b)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재판매 또는 사용이 제 3 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또는 (c) 공급자의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 위반; 또는 (d) 공급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운송, 판매 및/또는 제공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의 관계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제 3 자 손실, 청구, 채무, 손해, 경비, 비용 및 소송 일체가 포함된다.
- c.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ADM 은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ADM 은 수익 손실 또는 수익의 예상 손실, 사용 또는 생산 지연 손실 또는 사용 또는 생산 지연의 예상 손실, 사업기회 손실 또는 사업기회의 예상 손실, 명성 훼손 및 사업 중단 손실 성격의 여하한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사유를 불문하고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 부수적 손해, 간접손해, 특별

손해, 징계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계약, 불법행위, 엄격한 책임 등에 기하여 직·간접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 d. ADM 과 공급자는 손해를 초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허용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일방 당사자가 여하한 손해를 경감시키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의 합리적인 경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1. 해지

- a. ADM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일반조건 및/또는 주문서(확인된 추후 주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따른 거래를 공급자에게 **즉각적인**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책임없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i. 공급자가 본 일반조건과 주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러한 거래 이행 동안 위반한 경우;
 - ii. 공급자가 채권자들과 자발적 채무조정을 하거나 파산, 청산, 해산, 관리(administration) 또는 기타 지급불능절차(신설 합병 또는 재건 목적 이외)의 대상이 되는 경우;
 - iii. 공급자가 기일 도래한 부채를 상환할 수 없거나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iv. 여하한 자(저당권자 또는 기타 담보권자 등)가 공급자를 상대로 담보권을 행사한 경우;
 - v. 관재인이 공급자의 재산 또는 자산에 선임된 경우;
 - vi. 공급자가 사업을 중지하거나 중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vii. 공급자의 소유권 또는 지배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 viii. ADM 이 전술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 공급자에게 통지한 경우.
- b. 전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ADM 은 공급자에게 **30 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사유 없이, 공급자에 대한 책임 없이 언제든지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 c.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는 ADM 에 **30 일** 사전 서면 통지로서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다:
- i. ADM 이 연체 대금을 지급 일정 만료일로부터 **45 일**을 초과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ii. 상기 (i)호에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DM 이 거래를 이행하는 동안 본 일반조건 및/또는 주문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공급자로부터 서면으로 요청받은 후 **45 일**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12. 불가항력

공급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벗어난 사유(ADM 이 그의 합리적인 단독 재량으로 결정함)로 인하여 제품/서비스의 공급 및/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공급 및/또는 인도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즉시 ADM 에게 상황과 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 수단을 통지하고 주문서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 불가로 인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수단을 ADM 과 협의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당사자들이 대체적인 이행 수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ADM 은 공급자에 대한 책임 없이 주문서를 취소 또는 해지하고/하거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13. 양도 금지

- a. 주문서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법령 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의 이행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
- b. 공급자는 ADM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문서에 따른 그의 권리 및/또는 의무를 양도, 변경하거나 이전하지 않는다.
- c. ADM은 공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언제든지 본 일반조건 및/또는 주문서에 따른 그의 권리 및/또는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사 또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ADM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적 승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4. 관계

본 일반조건 또는 ADM에 대한 공급자의 서비스 또는 제품 제공 상 어떠한 것도 공급자와 ADM 간 여하한 종류의 합작투자 또는 파트너십이 생성되지 않으며 일방 당사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 직원, 수권 대리인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자도 이러한 상거래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명의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한이 없다.

15. 효력 및 기간

- a. 본 일반조건 및 기타 서면 부록(있는 경우)은 주문서 날짜부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 또는 주문서에 기재된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ADM이 해지 통지를 발송한 경우 해지일은 이러한 해지 통지에 기재된 날짜이다.
- b. 주문서에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주문서 및 본 일반조건은 ADM의 주소가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부록 A – ADM 의 표준준수조항(STANDARD COMPLIANCE CLAUSES)

I. 표준부패방지조항

A. 공급자는 ADM 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증한다:

1. 공급자는 부패방지, 부정경쟁 방지 및 공공조달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 일부가 이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당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을 통하여 확립된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들의 상거래에 의하여 생성된 의무를 이행한다.
2.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을 통하여 생성된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상거래에 의하여 확립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급자는 본 일반조건에 포함된 제한 및 요건을 여하한 사업 파트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다.
3. 서비스 이행 시 공급자 또는 공급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이 고용하거나 이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법인 또는 자, 정당, 정당 임원 또는 정당 후보자 및 이러한 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서비스,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급, 약속,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 a) 이러한 자 또는 조직의 행위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 b) 이러한 자 또는 조직이 그들의 법적 의무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 또는
 - c) 공급자 또는 ADM 을 위하여 부적절한 이득을 얻거나 공급자 또는 ADM 을 대리하여 사업을 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를 유인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

이러한 진술 및 보증이 당사자들 간 상거래 기간 동안 언제든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ADM 에게 즉시 통지한다.

B. 해지권

1.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의성실로서 행동하는 ADM 이 다음 각 호를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ADM 은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에 따른 여하한 의무 또는 관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상거래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a) 공급자가 미국 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각 ADM 회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적용되는 형법(Criminal Code) 및/또는 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해당 부패방지법을 반하여 뇌물, 리베이트 또는 기타 부패한 금품을 위하여 본 상거래의 일부로 지급할 보상금 또는 배상 비용을 일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는 중인 경우;
 - b) 전술한 조항의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위반된 경우; 또는
 - c)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을 통하여 생성된 관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본 상거래 또는 그 조건의 이행이 관계 법률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본 규정에 따른 해지는 ADM 이 공급자에게 서면 통지 즉시 배상금 지급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II. 제재 및 보이콧 금지 조항

1. 각 당사자는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각 당사자 또는 각 당사자를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각 당사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이 미국, E.U. (또는 E.U. 회원국), UN, 스위스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행의 원산지에서 채택한 거래 및/또는 경제 및/또는 금융 제재(들)(관련 법령, 명령, 조례, 결의안, 칙령, 제한 조치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타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하 총칭하여 “제재”)의 목표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상대방에게 진술 및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각자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을 이행함에 있어서 자신과 그 대리인, 계약자 및 대표가 모든 관련 제재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기로 동의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확약한다.
2. 공급자는 제품이 직·간접적으로 ADM 또는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로 하여금 관련 제재 및/또는 수출 또는 재수출 통제를 위반하게 할 수 있는 국가, 자연인(人), 법인 또는 기구에서 유래되거나 제공되거나 이러한 국가, 자연인(人), 법인 또는 기구가 소유하거나, 그러한 국적이거나, 용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선박 또는 운송인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국가, 자연인(人), 법인 또는 기구에 운송되거나 ADM 또는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로 하여금 관련 제재 및/또는 수출 또는 재수출 통제를 위반하게 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에 동의하고 이를 ADM에게 확약한다. ADM이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적절한 문서를 ADM에 제공하여야 한다. ADM은 주문서 및/또는 본 일반조건을 이행이 관련 제재를 위반하게 하거나 ADM 또는 그 대리인, 계약자 또는 대표 또는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가 관련 제재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제한된 원산지, 선박, 운송 경로, 개인 또는 법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ADM은 다음 각 호에 동의하고 이를 공급자에게 확약한다.
 - a) 제품이 공급자나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로 하여금 관련 제재 및/또는 수출 또는 재수출 통제를 위반하게 할 수 있는 국가, 자연인(人) 또는

법인에게 또는 공급자나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로 하여금 관련 제재 및/또는 수출 또는 재수출 통제를 위반하게 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의 목적을 위해 재판매 되거나

- b) 제품이 그러한 국가, 자연인(人) 또는 법인에 의해 또는 그러한 상업 활동의 목적을 위해 처분되거나
- c) 제품이 그러한 국가, 자연인(人) 또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그러한 국적이거나, 용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선박 또는 운송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국가, 자연인(人) 또는 법인에게 또는 그러한 상업 활동의 목적을 위해 운송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요구하는 경우, ADM 은 공급자에게 제품의 최종 목적지 확인을 위해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주문서 또는 본 일반조건의 이행이 관련 제재를 위반하게 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 계약자 또는 대표 또는 미국의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가 관련 제재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라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제한된 목적지, 선박, 운송 경로, 개인 또는 법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4. ADM 은 또한 공급자 또는 미국 관할권의 법규를 적용 받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 제재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라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국가, 은행, 기타 단체, 기구 또는 시설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제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제재 또는 제재 적용 가능성을 이유로 삼(3) 영업일 이상 방해, 차단, 지연 또는 금지되는 경우, 그러한 지급 문제가 공급자가 제재를 위반한 결과가 아닌 한, ADM 은 직·간접적으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대안적인 적법한 수단(은행, 정부 또는 기타 적법하게 구성된 규제 당국에 적용되거나 이에 의해 적용 또는 이행되는 경우)을 통해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5. 당사자들은 미국의 보이콧 금지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라 금지 또는 달리 처벌되는 문서 요청을 포함한 여하한 조건이나 요청에 협조하거나 이에 동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

6. 전술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및/또는 확인하기 위한 상대방의 합리적인 정보 및/또는 증빙자료 요청에 협조하기로 한다.

III. 인권 관련 특별 규정

본 계약에 포함된 다른 의무들에 추가하여, 공급자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음 사항을 엄격히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1. 16 세 이하의 인력을 사용하거나 강제 노동 또는 담보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직자에게 고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그러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인력 알선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용의 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금전, 신분증 또는 기타 개인 소지품을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한다.
3. 고용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입한다.
4.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및 절차를 유지하고, 근로자를 업무상 위험 요소, 괴롭힘 및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5. 고용 관련 결정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6. 연령, 최저임금 및 근무 시간 등과 관련한 법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 현지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과 산업 규범을 준수하는 근로 조건을 제공한다.
7.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8. 토지보유권 및 토착 및 현지 공동체가 법적 권리를 보유한 토지에서의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사전 동의를 하거나 그러한 동의를 보류할 수 있는 토착 및 현지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한다.
9. 농산물 공급망의 근로, 환경 및 안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한다.

IV. 감사권

ADM 은 공급자가 서면 또는 비서면 계약을 통해 생성된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본 일반조건의 조건 및 당사자들의 상업적 관계를 준수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공급자의 장부 및 기록을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ADM 과 공급자는 ADM 을 위한 또는 ADM 을 대리한 공급자의 활동을 보여주는 회계 및 기록만으로 한정되는 업무를 수행할 감사인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는 오로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ADM 은 법률 상 또는 법정 단체/기관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원래의 문서를 공급자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ADM 이 기록의 목적상 요구하는 경우 문서의 사본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기로 한다.

V. 개인 정보

벤더가 ADM 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범위에 있어서, 벤더는 (i) 모든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i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만 ADM 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공개하며, (iii) ADM 의 개인 정보의 보안, 무결성 및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술적 · 조직적 조치를 이행하고, (iv) 직원 및 제 3자도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DM 은 벤더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벤더는 ADM에 제공되는 모든 개인 정보가 적법하게 수집, 공유 및 처리되었으며, 예측 가능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만약 벤더가 ADM을 대신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 저장 또는 관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ADM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을 참조할 것: <https://www.adm.com/privacy/>